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원활한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해양경찰 분야의 첨단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잠수·구조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면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4명(경감 8명, 경위 9명, 경사 12명, 경장 50명, 순경 8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원 1명(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해

양경찰청의 정원 8명(순경 8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2.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5급으로”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513”을 “5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18”을 “423”으로 하며, 총경 이하 “410”을 “415”로 하고, 일반직 계 “95”를 “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4”를 “9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285”를 “12,48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91”을 “11,335”로 하며, 총경 이하 “11,182”를 “11,3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94”를 “1,1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94”를 “1,146”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생략)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u>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u>	② ----- <u>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u>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u>	④ ----- ----- <u>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3</u>	<u>520</u>	+7
경찰공무원 계	<u>418</u>	<u>423</u>	+5
·	·	·	
·	·	·	
충경 이하	<u>410</u>	<u>415</u>	+5
일반직 계	<u>95</u>	<u>9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4</u>	<u>96</u>	+2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285</u>	<u>12,481</u>	+196
경찰공무원 계	<u>11,191</u>	<u>11,335</u>	+144
·	·	·	
·	·	·	
총경 이하	<u>11,182</u>	<u>11,326</u>	+144
일반직 계	<u>1,094</u>	<u>1,146</u>	+52
3급 또는 4급 이하	<u>1,094</u>	<u>1,146</u>	+5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4